

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학생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4. 6. 1.

개정 2016. 3. 1.

개정 2018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다문화 가족 학생 및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생활 및 학습활동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생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①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1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2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② “결혼이민자등”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
2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

③ “외국인 학생”이라 함은 외국 국적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지원) 다문화 가족 학생 및 외국인 학생의 교육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① 수강신청 지원 :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이 소속된 스쿨 혹은 학과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이 대리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상담과 관련 전공(학과)의 협조를 통해서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②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 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멘토링 관련

1.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이 학습멘토링을 요청할 경우 학습도우미 모집 및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2. 전공 내 학습 동아리를 통한 협력 학습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조(상담 등)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의 원활한 대학생활과 진로 및 취업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①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의 경우 근로장학생 우선 선발을 통해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있도

록 지원.

- ②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의 대학생활 고충 상담 (학생진로상담센터와 연계)
- ③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 진로 및 취업 상담 & 추후지도 (취업정보센터와 연계)

제5조(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학생 지원업무 관련 부서 및 담당자)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학생 지원업무는 학생담당 부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관련 담당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우며 이들이 차별없이 대학생활에 적응해 나가도록 지원한다.

1.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 지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총괄
2. 다문화 가족 학생(외국인 학생)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